

실업크레딧

제도소개

구직급여를 받으시는 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실직 중 보험료 납부 부담도 덜어드리고 향후 지급 받는 국민연금액도 늘려드리는 제도

* 국민연금 가입 중에도 실업크레딧 중복 납부 가능

지원대상

국민연금을 최소 1개월 이상 납부한 분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분

* 고소득자 또는 고액자산가의 경우는 지원제외

*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구직급여 기간 중에는 '지역가입자 연금 보험료 지원' 불가

지원기간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 최대 1년(12개월) 지원

* 구직급여를 여러 번 받더라도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가능

지원방법

연금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지원
월 보험료 = 인정소득의 9.5%

※ (인정소득)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1/2, 최대 70만 원

월 지원금 = 월 보험료의 75%

※ 인정소득이 월 70만원인 경우,

국민연금 월 보험료 66,500원 중 75%인 49,860원을 지원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는 16,640원)

신청기한

(※ 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 신청)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4월 10일인 경우 5월 15일까지 신청가능



출산크레딧

'08.1.1.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12개월~50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하여주는 제도

◦ '26.1.1.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경우 첫째·둘째 자녀에 대해서 각각 12개월씩,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씩 가입기간을 인정(이 경우 50개월 상한 없음)

* 부모 중 1인에게 전부 인정 또는 각각 균분 가능

* 추후 연금을 신청한 때 가입기간을 추가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군복무크레딧

'08.1.1. 이후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 '26.1.1. 이후 군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실제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단, 최대 12개월 인정)

* 추후 연금을 신청한 때 가입기간을 추가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평생동안 지급되는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세요.

① **젊을 때부터 중단 없이 가입하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

② **부부가 함께 가입하기**

부부 각각 평생 동안 연금 수령

③ **가능한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개인가입자는 실제 소득보다 높게 보험료 납부가능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법 개정('25.4.2.)으로 '26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0.5%p씩 인상되어 '33년 최종 13%로 변경됩니다.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보험료율	9%	9.5%	10%	10.5%	11%	11.5%	12%	12.5%	13%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쉬운 정보 변환 서비스가 일부 적용된 안내문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연금 모두가 누리는 연금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안내

종합편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

홈페이지 www.nps.or.kr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

반납금 및 추후납부(추납)

제도소개

반납금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았던 금액에 반납금 신청 시까지의 이자를 더하여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

추후납부(추납)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추후납부(추납)를 신청 및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

신청대상

반납금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분으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분

추후납부(추납)

◦ 실직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가입자

◦ 연금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후 적용제외된 분 중, '아래의 기간'이 있는 가입자

- '99.4.1. 이후 무소득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01.4.1. 이후 기초수급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08.1.1.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15.7.29.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제외된 근로기간

◦ '88.1.1.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가입자

- 복무기간이 타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

※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 가능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 【추납】 혼인관계증명서상세(2008년 이전 이혼, 사별 이력이 있는 분은 제적등본 포함), 건강보험특실확인서(18세 미만 기간)

◦ 【군복무추납】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
※ 반납금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정부24, 디지털 ARS,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신청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소개

일정 소득 미만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납부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민인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신고소득이 80만원 미만인 분

지원금액 (2026년 기준)

- 월 보험료의 50% 지원
-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예시 국민연금 신고소득이 799,000원인 경우 본인 부담금 37,950원(50%)을 납부하면 국가가 37,950원 지원(50%) → **75,900원 납부 효과**

제외대상

-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 이상인 경우
- ‘실업크레딧’ 또는 ‘농어업인 국고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종료 시 지원신청 가능)

신청 및 지원절차

- 1 지원신청
- 2 요건확인
- 3 결정통보
- 4 지원시작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지원신청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접수

* 납부예외 또는 미가입 중인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 제출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제도소개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는 제도

지원대상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 가입자로 「농어업인 인정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는 분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분
- 농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분
- 1년 중 90일(60일)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

지원금액 (2026년 기준)

- 신고소득 **106만원 이하** → 월 보험료의 50% 지원
- 신고소득 **106만원 초과** → 월 50,350원 지원
- ※ 지원기간 제한 없음

예시 국민연금 신고소득이 106만원인 경우 본인 부담금 50,350원(50%)을 납부하면 국가가 50,350원 지원(50%) → **100,700원 납부 효과**

제외대상 (2026년 기준)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분
-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이 12억원 이상인 분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분

신청방법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분은 **증빙서류 제출없이 전화신청**
- ※ 경영체 미등록한 경우 1~3 중 하나의 서류 제출

1. 농업인
 - 농지대장(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분)
 - 축산업 등록증 등
2. 어업인
 - 수산업법, 내수면 어업법,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서류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어업신고증명서, 어업권원부 등
3. 공통
 -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

「저소득 근로자」 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제도소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지원대상 (2026년 기준)

-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월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자**(단, 기존가입자에게는 지원 불가)
- **신규가입자** 보험료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국민연금·고용보험)이 없는 근로자
 - ※ 단, 지원신청 해당 사업장의 가입이력은 제외하고 판단
- **기존가입자** 신규가입자가 아닌 근로자

지원금액 (2026년 기준)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 및 근로자 기여금의 각 80% 지원(사용자·근로자 각각 **월 최대 87,400원**까지 지원)

제외대상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 불가

지원기간

근로자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지원방법

해당월의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모두 납부**하면,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월의 보험료지원금을 뺀만큼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
※ 다만, 미납, 납기후 납부 또는 일시적으로 다음달(공제 받을 월)에 부과될 당월분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미지원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

제도소개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및 고용 안정화를 위하여 직접 고용에 따른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및 노후 소득보장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지원대상 (2026년 기준)

-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가사근로자로, 기준소득월액이 270만 원 미만인 **가사근로자(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 ※ 법인의 대표이사,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지원금액 (2026년 기준)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 및 근로자 기여금의 각 80% 지원

제외대상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 불가

지원기간

근로자별 최대 **36개월** 지원(두루누리 지원사업과 별도 지원이나 같은 기간 중복지원은 불가)

지원방법

해당월의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모두 납부**하면,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월의 보험료지원금을 뺀만큼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
※ 다만, 미납, 납기후 납부 또는 일시적으로 다음달(공제 받을 월)에 부과될 당월분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미지원